제1803호

2021. 2. 25.(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 보 미 디 어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61

영등포구보

고 시

· 제2021-2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 1
· 제2021-29호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 2
· 제2021-30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3

공 고

· 제2021-271호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5
· 제2021-290호 공인 등록 공고 ····· 4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15-2021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2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우리구를 영업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처분일자 : '21.2.25.(목)
2. 행정처분 내역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1	온누리캐슬	박재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발로31길 13 106호 (신길동, 시원트레벨)	경 고	주택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위반(변경신고지연-기술자)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5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29호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2-99호(2012.10.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1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4-104호(2014.11.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6-4호(2016.01.21.)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상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72(2층)

4. 준공인가의 내역

- 건축물: 지하2층/지상29층, 12개동, 공동주택(아파트) 1,008세대
  (임대18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기반시설: 별도 준공인가 예정

5. 준공인가일: 2021. 2.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30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4길 6 (양평동1가) 외 9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4길 6 (양평동1가)	2021-02-25	신규부여	2010-05-27	선유서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영등포 중흥 S-CLASS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64-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7-7 (신길동)	2021-02-25	신규부여	2010-05-27	영등포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04-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나길 7 (대림동)	2021-02-25	신규부여	2010-05-27	대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폐지고시일 : 2021. 2. 25.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가길 2 (신길동)	2021-02-22	2021-02-25	대장 말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가길 13 (대림동)	2021-02-22	2021-02-25	대장 말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24-16 (신길동)	2021-02-22	2021-02-25	대장 말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24-14 (신길동)	2021-02-22	2021-02-25	대장 말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14-7 (신길동)	2021-02-22	2021-02-25	대장 말소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16-12 (양평동4가)	2021-02-22	2021-02-25	대장 말소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49길 9-8 (영등포동2가)	2021-02-22	2021-02-25	대장 말소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271호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연번	안건명	소관부서
1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추진 외 3건)	도시계획과 외 3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4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일자리경제과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전협력과
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아동청소년복지과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복지정책과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붙임 상정안건 8부. 끝.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GTX-B노선의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구 여의도역에 조성되는 환승센터를 시범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공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제19조(예비비의 사용)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3)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안)[도시계획과-5807 (2020.07.16.)호]

나. 공모 개요

○ 공모명: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 공모대상: GTX 역사를 포함한 기초지방자치 단체
○ 공모내용: 버스 환승센터, 역사출입구, 대합실 등 환승센터 설치계획
○ 공모주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 인센티브
- 국비지원: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통한 국비 우선지원 (現 국비 30% → 50~70% 확대 예정)
- 행정지원: 분야별(교통·토목·도시 등) 총괄매니저를 구성하여 기획·구상·설계 전과정 컨설팅
- GTX연계: 출입구 및 대합실 위치 조정 등 GTX 기본계획 반영 검토
- 포상: 상위 5개소에 대해 우수환승센터 지정 및 표창(기관, 담당자)

다. 지출내역

(단위: 원)

구분	예비비	사용내역	반납예정	비고
공모 추진	35,000,000	34,890,000	110,000	
합계	35,000,000	**34,890,000**	110,000	

라. 예비비 사용 이유

○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따른 별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 사업의 시급성 및 계획 수립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당시 진행중이었던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업에 공모 추진 관련 공종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함

3. 추진경과

○ 2020.07.16.: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 2020.08.18.: 예비비 사용 승인 알림(기획예산과)
○ 2020.08.20.: 설계변경 시행(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금액변경: 35,000,000원 증액
· (당초) 472,000,000원 ⇒ (변경) 507,000,000원
○ 2020.09.18.: 공모(안) 접수(국토교통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 2020.11.12.: 공모 결과 발표(결과: 미선정)
○ 2020.12.15.: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준공
- 과업 준공에 따른 준공금 34,890,000원 지급(직접 경비 일부 삭감)
- 과업 준공후에도 주민열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행정절차 등 이행 예정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코로나19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가구원수 조정 및 이의신청, 외국인 지급에 따른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추가재원이 소요됨

2. 주요내용

가.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수 증가

1) 소요예산

구 분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최종 긴급재난지원금	비 고(증가)
대상가구수	175,813 가구	187,494 가구	6,377 가구
금액	104,014,800,000원	107,763,033,330원	3,748,233,330원

나. 추가재원 3,748,233천원 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우리구 부담분 203,792천원 예비비 사용

구 분	계	국비(83.7%)	시비(10.9%)	구비(5.4%)
금액	3,748,233,330	3,136,857,335	407,583,997	203,791,998

3. 추진경과

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소요재원 산출결과 통보(20.11.04)_서울시
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추가) 사전통지(20.11.09)_서울시
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소요예산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20.12.09)
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근로복지공단 이체(2020.12.24.)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3)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운용계획_[건강증진과-24273(2020.11.23.)호]

나. 개요

1) 사업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및 13~18세 청소년
- 62~64세 및 65세 이상 어르신
- 임신부 및 20~40대 A형간염 고위험군

2) 사업내용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17종) 비용 지원
- 성인 인플루엔자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 지원
-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비용 지원

3)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국비(30%)	시비(39%)	구비(31%)	계
국가예방접종 실시	당초내시	1,508,983	1,991,364	1,529,686	5,030,033
	변경내시	1,694,368	2,243,760	1,709,852	5,647,980
	증 감	185,385	252,396	**180,166**	617,947

4)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우리구 부담분 180,166천원 중 **56,538천원을 예비비로** 사용

다. 예비비 사용 이유

○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고려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한시적 지원 확대에 따라 확정내시 증액되어 추가 필요액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인원수	대상	인원수
어린이	생후6개월~13세 이하	34,616명	생후6개월~18세 이하	46,561명
어르신	65세 이상	59,215명	62세 이상	74,201명
임신부	임신주수 상관없이 지원	2,257명	(동일)	2,257명

라. 지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비비확보액	예비비사용액	예비비잔액	비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56,538	56,538	0	

3. 추진경과

○ 2020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안내 : 2020.07.10.
○ 예산 운용 계획 보고 : 2020.11.19.
○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 2020.11.24.
○ 예비비 배정(기획예산과) : 2020.12.17.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식 기피 상황이 심각하여 지자체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지정하여 안심 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

○ 사업기간: 2020. 8. ~ 2020. 12.(코로나19 종료시 한시적 운영)
○ 목 표: 총223개소
○ 사업내용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독려 및 위생물품 등 지원
- 음식점에서 실천 가능한 방역수칙을 제시하여 영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수칙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정비

○ 사업비: 총33,480천원
- 국비 16,740(50%), 시비 8,370(25%), **구비 8,370**(25%)

나. 예비비 사용 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식 기피 상황이 심각해져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지정하여 안심 이용을 유도하고자 국비 지원사업 필요액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 총예산(재원) 33,480천원 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우리구 부담분 **8,370천원 예비비 사용**

3. 추진경과

가. 안심식당 지정 현황 : 223개소 지정(2020.12.31)

○ 예산집행 내용 :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15만원 상당의 위생물품 지원
- 지원물품 : 지정표지판 및 스티커,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 예산집행 현황 : 총33,480천원 집행
- 국비 16,740, 시비 8,370, **구비 8,370** (50% : 25% :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제안이유

상위법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지침「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1) 이사의 정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안 제7조)
2) 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개정(안 제11조)
3) 직원의 임면 규정 정비(안 제16조)
4)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기한 규정 정비(안 제 28조)
5) 결산 첨부서류 명확화(안 제29조)
6) 업무상황 공표 횟수 규정 정비(안 제38조)
7) 경영평가 규정 정비(안 제39조)

나. 관련지침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1) 비상임감사 자격기준 개정(안 제10조)
2)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 개정(안 제13조)
3) 임원추천위원회 개의 정족수 개정(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1. 14.~2. 3./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등포구”를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를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상임 이사”를 각각 “비상임이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소속 공무원. 다만,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 및 직원”을 “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에”를 “법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호선하며”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이사회의 회의”를 “이사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비상임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소집하고 주관한다”를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회의 참석수당 이외 이사 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 등을”을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로 한다.

제15조 중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를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의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남은위원”을 “남은 위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3분의 2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당 및 여비”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따라”를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사업연도 개시 40일전”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립”을 “확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류”를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등포구에서의”를 “구로부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료후”를 “종료 후”로, “구회계”를 “구 회계”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결의와”를 “의결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공단은”을 “이사장은”으로, “1회”를 “2회”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경영평가)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4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생 략)	제4조(자본금) ①----------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②·③ (생 략)	제7조(임원) 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비상임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영등포구의 기획재정국장, 안전교	제9조(이사) ①----------. ----------비상임이사----------. ② (현행과 같음) ③ 비상임이사----------. ---------- 구----------

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소속 공무원. 다만,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신 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임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사회) ①·② (생 략)	제13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③ ----------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④ ----- 이사회----------. ---------- 비상임이사----------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 이외 이사 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의결----------.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따른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제3호에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성) ①---------- ---------- 남은 위원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1.「지방공기업법」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60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의) ① (생 략)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과반수----------.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 담당 팀장-----.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② (생 략)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연도) ---------- 구----------.
제27조(회계처리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제27조(회계처리 원칙) ①----------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 회계처리---------- -----.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확정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결산) ① (생 략)	제29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입 및 정산) ① 제24조에 따른 사업 수입금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영등포구 세입으로 납부한다.	제30조(수입 및 정산) ①---------- ----------구 ----------.
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 ----------.
1. 영등포구에서의 전입금	1. 구로부터의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불용액은 구회계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 종료 후 ---------- ---------- 구 회계---------- -----.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등포구 세입에의 납입	4. 구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 의결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이사장은 ---------- 2회---------- ---------- ----------.---------- ----------.
제39조(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공단의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경영평가)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	

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② (생략)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③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제안이유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의 고지에 관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정의된 용어에 대해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조항 일부 삭제 (안 제2조)

나.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에 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을 폐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2. 4. ~ 2. 7./ 3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3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를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삭 제>
4.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시행령 제5조----------.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 물 ----------.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의 경기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 거

1)「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3) 2021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일자리경제과-10371(2021. 2. 16.)]

나. 개 요

1) 우리 구 기존 보증한도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원)

구 분	금 액	기 준
총 보증한도(A)	4,000,000,000	출연금 X 10배
한도소진액(B)	3,947,445,244	a-b+c-d
실 행(a)	6,138,650,000	보증실행
해 지(b)	3,116,092,852	보증해지
사 고(c)	1,017,555,676	사고발생 X 2배
정 상 화(d)	92,667,580	사고정상화(전액) X 2배
접수금액(C)	0	접수, 승인, 약정 금액
한도여유액(D)	52,554,756	(A-B)
접수가능금액(E)	52,554,756	(A-B-C)

※ 한도여유액 범위 내 상반기까지 운용 예정

2) 신용보증재단 출연 시 효과

-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추천하여 지원 가능
- 출연금의 12배 한도로 보증 지원 가능
※ 2억원 출연 ⇒ 24억원 한도 신용보증 지원
- 은행과 합동 출연하여 시너지 효과 실현

3) 신용보증재단 출연 시 지원정도 예측

구 분	출연금액	보증지원한도
영등포구	200백만원	2,400백만원
은 행	200백만원	2,400백만원
합 계	**400백만원**	**4,800백만원**

다. 출연의 필요성

○ 적은 재원으로 출연금의 12배 한도까지 보증 지원 가능하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은 필수적임

○ 기존 운용하고 있는 신용보증의 보증한도 여유액이 부족하고 상반기까지 운용 예정으로 추가적인 출연으로 보완되어야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필요성

○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 가능
○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통일부 등)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마련으로 남북 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 마련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한 우리 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질적 향상 및 사업추진 역량강화

4. 규약 주요골자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제1~4조)
○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제5~9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제10~11조)
○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제12~15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제16조)

5. 첨부사항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붙임 1)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첨부사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 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① 이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②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가 되지 않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서 제외된다.

제4조(조직) ① 총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두고 권역별 위원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2명 이상인 경우)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단체장이 해당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⑥ 총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국장으로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회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고,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여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조정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무처리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의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 기업유치 분과
2. 그 외 분야는 총회에서 결정
② 각 실무협의회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한다. 단,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업무담당 부서장(과장급)과 그 업무담당 직원이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 실무협의회는 각 사안별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총회에 보고 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필요시 사무국을 남북협력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3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그 밖의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2021. 2. 5. 기준)

구 분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경기 (32)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50개
서울 (5)	중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성동구	
부산 (4)	금정구, 남구, 동구, 연제구	
울산 (1)	울주군	
경남 (4)	거제시, 합천군, 고성군, 통영시	
충남 (4)	당진시,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 협의회 구성결과 소관부처 보고완료(통일부, '20.5.11) 후 15개 자치단체 가입신청
→ 13개 자치단체 의회 의결절차 진행중 / 향후 참여결과에 따라 구성현황 변동 가능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근거

지방자치법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2. 제안사유

○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2020.10.16.)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 추가(규약 제3조)**

- 회원 자격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명 거주 외에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추가**

○ **임원 확대 구성(규약 제5조)**

- 회장,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

○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규약 제12조)**

- 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안건)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15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면서”를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거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신설하고, 제6항에 “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통지 한다”는 내용을 포함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단, 외국인주민 1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1만명이상 거주하거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단, ----------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 ---------- 부회장 2인을-----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등) <신 설>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등)** ⑥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통지 한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2012.11. 7. 제정
2015. 6. 5. 개정
2016. 6.10. 개정
2019. 4.23. 개정
2020.10.16. 개정

제 1 장 >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거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외국인주민 1만명 이하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개정 2020. 10. 16.)
② 추가 회원은 협의회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 탈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협의회의 승인에 의한다.
④ 협의회는 참여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으로 구성하고, 장 또는 부단체장을 협의회의 위원이라 한다.(개정 2016. 6. 10.)

제 4 조 (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②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 한다.

제 2 장 > 임원 및 운영

제 5 조 (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둔다. (개정 2020. 10. 16.)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개정 2016. 6. 10.)

제 3 장 > 회의 등

제 8 조 (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정기회의 : 연 2회 이하
②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을 감안 회장단이 소집

제 9 조 (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사업 등)
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①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②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③ 다문화 관련된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④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⑤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11 조 (사무처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 실·과·소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실무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간사는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통지 한다. (신설 2020. 10. 16.)

제 4 장 > 재정

제 13 조 (회비 및 분담금 등)
① 협의회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
② 일반회비는 연 360만원으로 하며 회장단체에 납부하고, 협의회 운영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15. 6. 5., 2019. 4. 23.)
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의 경우 지출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분담하며,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14 조 (회계관리)
① 협의회 운영경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매년 1회 정기 회의에서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개정 2019. 4. 23.)
②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9. 4. 23.)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본 회칙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별도규정)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 조 (협의회 최초 구성시 가입한 회원)
이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최초 가입 회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서대문구·강서구·구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평택시·안산시·고양시·남양주시·시흥시·용인시·김포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경상남도 김해시이다.

제 5 조 (회비특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창립년도의 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2015. 6. 5.)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0.)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3.)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의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함.

2. 주요내용

○ 제4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유지, 2021년 1년간 추진할 구체화된 내용 구성

○ 2021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행계획의 개요(시행계획의 체계, 특징 및 방향, TF구성·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재정 및 행정 계획(조직 및 인력 운영 관리 개선 계획,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개선 계획)
-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
- 시행계획의 세부내용(4개 추진전략, 47개 세부사업)

○ 2021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내용

- 목표: 내일이 든든한 복지, 안전하고 탁 트인 영등포
-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추진전략	세부사업
함께돌봄 네트워크 강화	1-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복지안전망 강화
	1-2.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축
	1-3. 영등포형 노인통합 네트워크 강화 **(폐지)**
	1-4. 어르신 뇌 건강 지킴이 치매 안심센터 운영 **(폐지)**
	1-5. 보건복지연계 강화
	1-6.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1-7. 권역별 맘든든센터 신설
	1-8. 나눔활동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
	1-9.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화
	1-10. 장애인식개선사업
	1-11. 구민과 함께 다시서는 노숙인 지원
	1-12. 다문화관련 한국생활 적응력향상 지원
	1-13.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1-14.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15. 어르신 여가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1-16. 돌봄SOS센터 운영
	1-17.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1-18. 초등돌봄시설 조성 및 운영
	1-19. 비대면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운영 **(신설)**

추진전략	세부사업
창의적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2-1. 글로벌 인재육성 및 진로·진학 교육 강화
	2-2. 내일의 꿈이 자라는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2-3. 신길 공공도서관 건립
	2-4. 맞춤형 도서관 신설 및 확충
	2-5. 지역연계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
	2-6. 교육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지원(어린이집)
	2-7. 마을결합형 학교 신설 지원 **(폐지)**
	2-8.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및 운영
	2-9.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
	2-10. 방과 후 교실운영 지원
	2-11. 아동친화도시 조성
생활환경 조성	3-1. 수변생태 순환길 조성 **(폐지)**
	3-2. 주민 1인당 녹지공간 확대
	3-3. CCTV 확대 등을 통한 안심치안 강화
	3-4.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3-5. 쾌적한 학교주변 통학로 만들기
	3-6. 산업유산 부지, 문화발전소로 재생
	3-7. 도시재생을 통한 청년희망복합타운 조성
	3-8. 문래동 공공공지 문화예술 복합거점 조성
	3-9.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고가차도 철거) 및 상징공간 조성
	3-10.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3-11. 화재안전취약 주거지역 소방시설 지원
	3-12.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3-13. 친환경 방역사업
	3-14.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지원(장애인시설, 어르신시설) **(폐지)**
	3-15.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구축 **(신설)**
	3-16. 어르신 디지털안전망 구축 **(신설)**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활성화	4-1.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4-2.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4-3. 청년일자리 기반 조성
	4-4.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4-5.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
	4-6.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

3. 추진일정

○ 2021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실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 단서 신설(안 제2조)

1)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 신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범죄피해자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 · 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1. 14. ~ 2. 3.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290호

공 인 등 록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 제8조,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폐기 및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인 등록 내역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등록사유	등록일
직인	도림동장인 통합민원전용1(횡)	2.4cm * 2.4cm NBR		통합민원 발급기 사용(횡)	2021.2.26.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등록사유	등록일
직인	영등포구청장의인 지적사무용	2.3cm * 2.3cm NBR		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른 등록	2021. 2.25.

❍ 공인 폐기 내역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폐기사유	폐기일
직인	영등포구청장의인 건축물대장용	2.3cm * 2.3cm NBR		자동인증기교체에 따른 기존공인의폐기	2021. 2.26.